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소음대책지역 지정,
철도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계획 수립 등 〉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29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제2200429호) ····· 1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 1

Ⅲ. 주요내용 ····· 2

Ⅳ. 검토의견 ····· 3

1. 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 ····· 3

가. 제정안의 취지 ····· 3

나.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 5

다.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 9

라. 비용추계 ····· 18

2. 조문별 검토 ····· 19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조 내지 제3조) ····· 19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4조) ····· 23

다.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안 제5조) ····· 25

라.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안 제6조) ····· 28

마. 철도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 주민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 32

바. 철도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안 제8조) ····· 35

사.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안 제9조) ····· 38

아.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안 제10조) ····· 42

자. 보상금 지급 및 신청절차 등(안 제11조) ····· 43

차.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 소멸시효 등(안 제12조 내지 제15조) ····· 48

카.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 51

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및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안 제18조 및 제19조) ····· 54

파. 자금(안 제20조) ····· 59

하. 각종 부담금의 면제, 세제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안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 63

거. 보고·검사 등, 권한의 위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과태료 (안 제23조 내지 제27조) ····· 66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429호)

Ⅰ.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6. 13.

3. 회 부 일 : 2024. 6. 14.

Ⅱ. 제안이유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의 경우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어 소음피해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반해, 철도 주변 주민들은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그동안 피해방지대책 지원 및 정당한 보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항 주변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방지대책 및 그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 주변 주민들의 주민복지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철도소음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다.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라.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6조제1항)

Ⅳ.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

가. 제정안의 취지

제정안은 철도 소음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임.

현재 교통수단에 따른 소음의 경우,「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및「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항공기에 의한 소음에 대해서만 대책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음.

철도 소음에 대한 기준 및 보상 근거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소음에 대한 일반법인「소음・진동관리법」에 소음 기준이 규율되고, 소음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철도 분야에 대해서도 소음 기준 및 그 보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체계를 보임.

【 제정안과 공항소음방지법 구조 비교 】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제5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제6조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제6조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제7조	철도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 주민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	철도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8조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9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제9조	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제1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0조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제11조	보상금 지급 및 신청절차 등	제11조	손실보상
제12조	이의신청 등	제12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
제13조	보상금의 지급	제13조	토지매수의 절차 등
제14조	소멸시효	제14조	비용의 부담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제15조	기부채납된 토지의 관리
제16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2	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6조	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제18조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9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8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자금	제19조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21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20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제22조	세제 지원	제21조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22조의2	지역기업의 우대	제22조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2조의3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제23조	자금
제23조	보고·검사 등	제24조	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제24조	권한의 위임	제25조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2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	세제 지원
제26조	벌칙	제26조의2	지역기업의 우대
제27조	과태료	제27조	보고·검사 등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과태표

나.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제정안은 소음 관련 일반법인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 소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소음·진동관리법」에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 수립,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등이 이미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인 교통소음·진동 한도도 규정(주간 70~75, 야간 60~65LeqdB[1])되어 있음.

또한, 철도 소음은 방음벽 설치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 공항소음과 특성이 달라 별도 보상법률을 두는 것은 부적절함.

철도시설의 경우 소음피해지역에 방음벽 설치, 서행 등을 통해 소음기준치 이내로 저감 조치가 가능함. 아울러 소음영향 범위가 해당 개소에 한정되고 외곽지역인 공항과 달리 철도는 노선 전체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도심 지역이 많아 보상범위가 과다하여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됨.

또한 피해조치가 불가한 공항, 비행장을 제외하고, 도로, 공장, 공사장 등 타 소음원도 별도의 보상법률을 두지 않고 있으며, 모든 소음원마다 개별 법률로 보상 규정을 두는 것은 부적절한바, 소음 관련 불가피한 보상 필요시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보

1) equivalent noise level, 등가소음도. 소음 진동 공정 시험 방법에서 정한 것으로, 임의의 측정 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 소음의 총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 정상 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데시벨(dB) 단위로 표기한 것임. 측정 시간에 따라 “00분간 등가소음도 70dB” 등으로 표기함.

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행정안전부

동 법안 제5조의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판단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국정과제로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철도산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련이 있는 위원회를 추가 신설하기 보다 기존 철도산업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철도사업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 설치·운영하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됨.

3) 국가철도공단

소음 관련 개별법이 제정된 공항은 면(面) 단위인 반면, 철도나 도로는 선(線) 단위 사업으로 시설의 특성 자체가 상이함.

공항의 경우 해당 개소에 한하여 소음이 발생하지만, 철도와 도로는 노선 전체에서 소음이 발생함. 반면, 철도와 도로는 소음원(열차, 자동차)이 지역 주민 거주공간과 동일한 지상부에 위치하여 소음원으로부터의 피해 완화가 가능하나, 공항의 경우 소음원(항공기, 전투기 등)이 거주공간의 공중에 위치하여 피해를 완화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됨.

지역 주민 거주지역의 교통 소음은 해당 지역에 철도 외의 소음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항공기, 도로 소음 등)이 혼재할 가능성이 높아, 철도로 인한 소음만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어려움.

기존 법률과의 중복성 관련, 철도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철도로 인한 소음을 관리중임. 고속철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소음협의기준(환경부)'을 적용함. 철도 건설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예측 소음도를 분석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기준치 내로 주민 피해를 완화하고 있으며, 철도 운영단계에서 열차 운행계획 변경 등 여건 변동으로 철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방음시설 설치 등 피해 완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 중임.

또한, 「환경분쟁조정법」에 의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철도로 인한 소음 등의 분쟁을 알선, 조정, 재정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 중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

관련 법령에 따라 철도 소음을 관리 중에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 제정은 여러 법령의 혼재로 이해관계자 간의 혼선과 갈등의 발생이 우려되고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4)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철도공단에 선로 사용료를 내고 철도를 운영하는 사용자임(고속도로 통행료를 내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운행자와 유사).

「공항소음방지법」에서 공항소음대책을 항공사가 아닌 공항시설관리자,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것과 비교해서 철도소음관리 및 보상금 지급 등에 철도운영자를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함.

다.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관련 현황

현재 철도소음 방지 대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방음벽 설치임. 방음벽 설치의 경우 ① 철도의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② 사후적으로 철도소음 관련 민원제기, 방음벽 설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열차운영계획 변경 등 여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철도공단에서 소음도 측정을 거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됨.

사전적으로 설치되는 방음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건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에 소음·진동이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소음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음[2].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 기준 진행 중인 철도건설 사업은 총 49건인데, 이 중 환경영

---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33조(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나. 소음・진동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소음・진동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소음・진동발생원 분포현황(장래계획 포함) 및 전달경로 - 정온시설(교육시설, 병원, 주거시설, 축사 등) 분포현황 - 사업지역 주변 개발계획 현황(사업시행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조사) - 소음・진동도 현황(현황측정) (이하 생략)

향평가 결과에 따라 방음벽 시공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18건임.

사후적으로 설치되는 방음벽을 살펴보면, 철도 노선 주변에 위치한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방음벽 설치 요구가 제기되는 경우, 국가철도공단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소음도 측정을 통해 그 소음도가 철도소음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지를 확인하고, 철도소음의 정도가 철도소음관리기준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철도 노선과의 이격거리·가구 수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방음벽 설치 대상을 선정하고 있음.

【소음도 측정 결과 예시】

○ 주간 소음기준(70dB)은 만족하나, ❶번 위치 야간 소음기준(60dB) 초과

위 치	주 간 (dB)			야 간 (dB)	비 고
	1회	2회	산술평균	1회	
❶	62.4	60.9	61.7	65.2	(소음기준) 주간 70dB / 야간 60dB
❷	66.7	57.9	62.3	58.6	

▸ 소음 · 진동 공정시험기준 '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 ㅇ 옥외 측정을 원칙으로 지면 위 1.2m~1.5m 높이로 측정
- ㅇ 주간 시간대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 야간은 1회 1시간 측정
- ㅇ 배경 소음도는 철도 운행이 없는 상태에서 측정점과 동일한 장소에서 5분 이상 측정

□ 가야선(가야 · 경부 · 동해선 삼각지) 소음측정 결과 보고

□ 대방동 우정아파트 주 · 야간 소음측정 결과 보고

ㅇ 주간 소음기준에 만족하나, 야간 소음기준 초과

소음측정 단위 : dB(A)

구분	주간			야간		열차 운행 대수
	측정 값		기준	측정 값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505번지	1회	66.2	70 (주거지역)	60.3 (기준치 이내)	60 (주거지역)	주간 1회 : 37 대 주간 2회 : 55 대
	2회	65.2				
	산술평균	66.7 (기준치 이내)				야간 : 38 대

※ 자료: 국가철도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방음벽 설치 및 개량 절차】

□ 방음벽 업무 프로세스

방음벽 설치 수요 조사	→	요구 개소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제출	→	방음벽 중기계획 수립·통보	→	사업시행
(본사→지역본부) 현장조사, 관련기준 검토 등		(지역본부→본사)		(본사→지역본부)		(지역본부)

□ 우선순위 선정기준

	철도소음수준(50점)	+	정주환경(30점)	+	소음 유발 환경(15점)	+	기타(5점)
설치	등가소음(20) 순간최대소음(18) 열차운행횟수(6) 민원 수(6)		거주 주민 수(12) 용도지역 구분(8) 공공시설 유무(10)		소음 유발 유무(5) 완화 가능유무(5) 야간 소음 초과(5)		소음 악화(2) 열차운행횟수(2) 선로이격거리(1)
개량	철도소음수준(25점)	+	구조 안전성(45점)	+	노후도(20점)	+	기타(10점)
	등가소음(15) 순간최대소음(5) 민원 수(5)		방음판 파손 등(15) 지주, 기초 파손 등(30)		경과년수(5) 미관성(5) 내구성(10)		도심지여부(5) 열차운행횟수(3) 선로이격거리(2)

※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허가 승인일이 철도건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일 이후인 경우,「주택법」제4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주택사업시행자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방음벽 설치 및 개량 시행

※ 자료: 국가철도공단

2) 철도 소음에 대한 민원 증가 및 제도개선 필요성

철도 소음에 대한 민원[3]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최근 5년간 철도소음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연 평균 약 460여건의 철도소음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었음.

3) 철도 소음 고층이 더 크다? '92dB' 굉음에 주민 고통, KBS 뉴스, 2022.10.05.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71862 : 검색일 2024.8.16.)

【 최근 5년간 철도소음 관련 민원접수 현황 】

(단위 : 건수)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연 평균
336	501	519	220	722	2,298	459.6

* 민원 건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 자료: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통해 철도소음 피해 빈발민원 해소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국토교통부, 환경부**

□ **조치사항**

내용	관계법령 등	조치기한
1 **철도소음 관리기준 강화**(환경부) ○ 최고소음도로 인한 불편 완화를 위한 고시(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개정 ○ 철도소음 노출에 따른 국민들의 성가심 정도 등 연구 ○ 관련 법령 개정 등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 공정시험 기준」 등	'23. 6월 (고시 개정) '23. 12월 (조사.연구) '25. 6월 (법령 개정)
2 **철도변 공동주택 소음기준 합리화**(국토부) ○ 실외소음도 중심의 주.야간 소음도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연구 ○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24. 6월 (조사 및 연구) '24. 12월 (의견 수렴) '25. 6월 (법령 개정)
3 **입주자에 대한 상세 소음 정보 제공**(국토부) ○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교통소음 영향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을 위한 연구 * 철도변 공동주택의 경우 실외소음도 정보공개 ○ 관련 규칙 개정 등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24. 6월 (조사 및 연구) '24. 12월 (의견 수렴) '25. 6월 (규칙 개정)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철도소음 피해 빈발민원 해소방안, `21.12.

위와 같이 철도 소음에 대한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관련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조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임. 2022년과 비교할 때 2023년 소음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소음측정 및 소음기준 초과 건수도 늘었으나, 방음벽 설치는 오히려 감소하였음.

【 연도별 소음민원, 소음측정, 소음기준 초과 건수】

연도	소음민원 건수	소음측정 건수	소음기준 초과 건수
2019	336	67	13
2020	501	64	12
2021	519	78	13
2022	220	50	2
2023	722	75	13
합계	2,298	334	53

※ 자료: 국토교통부

【연도별 방음벽 설치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개소	298	235	235	58	135	47
연장(m)	56,258	54,192	42,996	15,215	29,528	6,154

※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로 전체 철도 노선 연장이 5,085km이며 방음벽의 연장은 908km임.

【철도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현황】

구 분	소속별	개소	연장(m)
총계		3,849	908,442
고속철도	소 계	613	150,057
	오송	324	89,963
	경주	123	25,524
	정읍	166	34,570
일반철도	소계	3,236	758,385
	서울	102	33,845
	수도권동부	390	106,288
	수도권광역	557	141,616
	강원	214	30,004
	대전충남	384	92,622
	충북	184	38,789
	전북	196	38,871
	광주전남	110	20,088
	광주	140	34,832
	대구경북	124	21,797
	대구	408	103,244
	부산경남	427	96,390

※ 자료: 국토교통부

3) 철도소음 기준 개선을 통한 정확한 소음정도 파악 필요

현행 철도소음관리기준에 대하여 철도 소음에 따른 불편도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주거지역의 철도 소음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간(06:00~22:00)의 경우 70LeqdB(A),

야간(22:00~06:00)의 경우 60LeqdB(A)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철도 소음 관리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9. 12. 31.>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2. 철 도

대 상 지 역	구 분	한 도	
		주 간 (06:00~22:00)	야 간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 음 (LeqdB(A))	70	60
	진 동 (dB(V))	65	60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소 음 (LeqdB(A))	75	65
	진 동 (dB(V))	70	65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기 철도 소음 관리 기준은 1시간의 소음도에 대한 평균치에 해당하는 '등가소음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철도가 통행하는 순간의 '최고소음도'에 대한 불편도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4].

따라서 철도 소음과 관련하여서는 그 소음 수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국내에서의 철도 소음에 따른 피해의 정도에 대해 선행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4) 철도소음 측정방법 개선을 위한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마련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8.12., 국립환경과학원 시행 연구용역과제 결과보고서

심사시에는 철도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방음 기준 검토 및 철도소음 관리 실태 조사, 철도교통 환경변화에 대한 소음 민원 대응 대책 수립, 방음벽 설치기준 재정립 및 관련 법규 개정(안) 등 정책 제언 제시, 소음저감기술 적용에 따른 소음저감 효과 검증을 위해 “철도소음 종합대책 및 방음시설 개량계획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5]을 진행 중임.

따라서 제정안에 대한 심사 시에는 향후 위와 같은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철도 분야 소음 보상법 제정으로 인한 형평성 고려

철도 분야에 대해 별도의 소음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기타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소음에 따른 보상법이 존재하는 교통수단으로는 항공 분야가 있는데, 항공기 소음 정도는 그 정도가 도로·철도 등 육상교통에 대한 소음에 비해 심하다는 점, 공항·군공항 시설의 경우 기피 시설에 해당되

5) ○ 용역기간 : 2023. 5.30. ~ 2024. 11.1. (17개월)
○ 용 역 비 : 금291,783,761원 (일반철도시설개량사업비)
○ 계 약 자 : ㈜삼우에이엔씨(90%), 기술사사무소 토담방진방음(10%)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항공의 경우 항공기가 집중적으로 이·착륙하는 공항 근처 지역에 한정하여 소음 보상이 가능한 반면, 철도의 경우 선형 노선 근처 지역에 모두 소음 보상이 가능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철도 분야에 대해 소음 보상법을 제정하는 경우, 도로의 육상교통 수단에 의한 소음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법을 제정해야 하는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라. 비용추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720만원, 2030년 72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억 1,600만원(연평균 2,32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7조)	80	-	-	-	-	80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8조)	7.2	7.2	7.2	7.2	7.2	36
합계	87.2	7.2	7.2	7.2	7.2	116

다만, 동 재정소요는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소음대책위원회 설치 등 행정적인 조치에 따른 재정 소요이며, 소음대책 지역에 지급되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출액은 포함되지 않은 것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는 제정안 제11조의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신청 절차, 제정안 제13조 보상금의 지급 규정의 경우 토지출입, 철도소음지역 지정 등에 따라 국가의 손실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철도소음지역 현황이 현재 확정되지 않았고, 피해인정기준, 피해가구, 피해가구당 지원방법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2. 조문별 검토

가. 목적, 정의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철도소음대책 사업 및 주민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철도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소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이하 “철도”라 한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철도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철도운영자”란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를 말한다. 4. “철도건설사업시행자”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를 말한다. 5. “철도소음대책사업”이란 철도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소음피해 보상”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 “소음영향도”란 철도 운행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도소음의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의 철도소음대책 사업과 거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안 제1조에서는 제정안의 목적을 철도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철도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제1호에서는 “철도소음”을 “철도소음”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이하 “철도”라 한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음.

안 제2조제3호 및 동조 제4호에서는 각각 철도운영자 및 철도건설사업시행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 제정안에서 철도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주체로 두 주체를 꼽고 있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철도 소음을 철도 ‘건설’ 단계에서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철도 소음은 철도 ‘건설’ 단계 뿐만 아니라 철도 ‘시설 관리’ 단계에서도 저감 노력이 필요한바, 제정안에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철도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주체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컨대 기존에 설치된 철도 노선의 주변 지역에 사후적으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시행되어 철도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점, 철도시설 관리 과정에서 소음 저감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철도 시설 관리와도 무관하지 않음.

특히 현재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시설관리자의 자격으로 철도 소음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철도 소음 문제가 철도 시설의 유지·보수와 연관되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정안에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철도 소음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정안의 일부 조문 또한 수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하 개별 조문에서 후술함.

참고로,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철도안전법」제2조제9호[6] 또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9호[7]를 인용하여 이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여 이 법을 철도소음 방지

---

6)「철도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9조에 따른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철도 소음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이 없고, 소음 분야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바, 철도소음관리기준 또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되고, 철도소음피해의 보상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조정법」[8]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철도 소음 분야에 대해서는 제정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 제3조의 규정이 필요할 것임.

---

8)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안 제4조)

제 정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철도운영자 및 철도건설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철도운영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제4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철도운영자 및 철도건설사업시행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철도소음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하는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에 철도운영자 및 철도건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 검토시에 살펴본 바와 같이, 철도시설관리자 또한 철도 시설 관리 과정에서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소음 대책의 수립·시행 주체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주체로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철도운영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원 확보 책무를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음. 이는「공항소음방지법」[9] 및「군소음방지법」[10]등의 입법례에 따른 것으로 보임.

9)「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0)「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철도소음으로 인한 철도주변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철도소음으로 인한 철도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변경 사실,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제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토지·건축물 소유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정안은 제5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으로 이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공항분야의 경우「공항소음방지법」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11]에서 분류되는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구역이 구별되어 관리되고 있음. 예컨대 제1종 구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12]79 이상, 제2종 구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75 이상 79 미만, 제3종 구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61 이상 75 미만의 구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임.

---

11)「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1. 제1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79 이상
2.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75 이상 79 미만
3. 제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61 이상 75 미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가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70 이상 75 미만
2. 나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66 이상 70 미만
3. 다 지구: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61 이상 66 미만
12) LdendB(A)(day-evening-night average sound level, 가중등가소음도).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 연방항공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방법으로 등가소음(Leq)에 저녁시간 (19:00 ~ 22:00)에는 5dB, 야간시간대(22:00~07:00) 에는 10dB의 가중치를 둔 평가 단위이다.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른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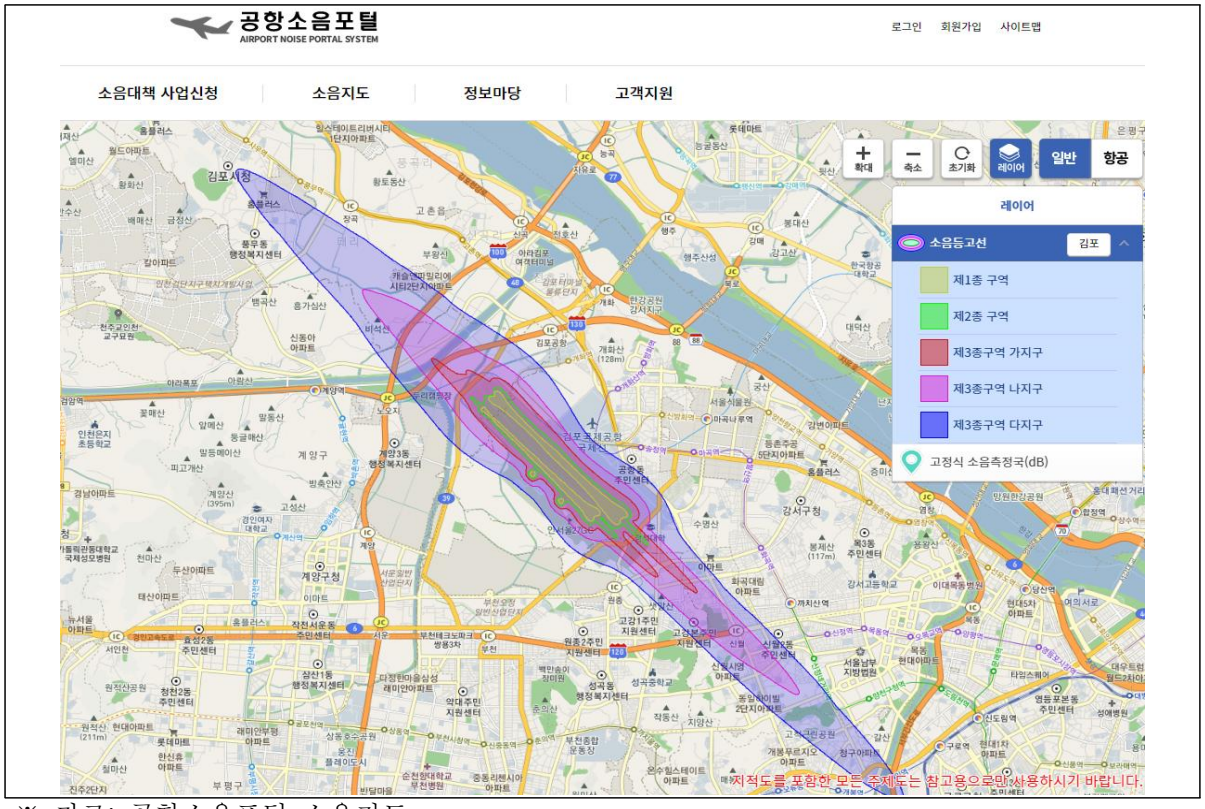

※ 자료: 공항소음포털 소음지도

제정안은 철도 주변 지역에 대하여도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구역을 구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철도 분야의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철도 분야 소음 기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데에 비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 분야에서는 소음 구역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로서 부재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라.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철도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되,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소음대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음영향도가 큰 지역에 특정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거나 용도제한 지역을 두기 위한 취지로, 설치 및 용도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유사 사례인 「공항소음방지법」의 경우에서도 아래와 같이 시행규칙에서 소음대책지역별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시설물 설치제한 및 용도제한 유사입법례】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29.>

시설물 설치제한(제4조 관련)

구분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 [LdendB(A)]	제1종	제2종 및 제3종 가 지구	제3종 나 지구 및 다 지구
대상 시설	79 이상	70 이상 79 미만	61 이상 70 미만
주거용 시설	신축 및 증축·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교육 및 의료시설	신축 및 증축·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공공시설	신축 및 증축·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그 밖의 공장, 창고 및 운송시설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 허가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개축 허가	

비 고

1.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에만 해당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기원,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만 해당한다.

2. 위 표에서 "교육 및 의료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용 시설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 예정인 토지(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아 주거용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조성 중이거나 조성예정인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주거용 시설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1. 29.>

시설물 용도제한(제4조 관련)

구 분	구 역	소음영향도 [LdendB(A)]	용 도 제 한 지 역
소음 대책 지역	제1종	79 이상	1. 완충 녹지지역(이륙·착륙 안전지대) 2.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 설치 가능
	제2종	75 이상 79 미만	1. 전용공업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자연녹지지역
	제3종	61 이상 75 미만	1. 준공업지역 2. 상업지역

비 고
소음대책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항공 분야의 경우, 소음 대책 지역이 비교적 공항 인근 지역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 제한 및 용도제한 지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소음 관리가 가능한 측면이 있음.

철도 분야의 경우, 철도 노선의 전체 연장을 고려하면 노선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주거용 시설, 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에 대해 신축 및 증축·개축등을 제한하기에는 현실적 제한이 따를 수 있음.

또한 현행「철도안전법」제45조[13]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행위가 이미 제한되고 있어 제정안의 동 조항이 중복적인 규제가 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3)「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노면전차(이하 "노면전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굴착,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⑤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철도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 주민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철도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 주민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철도소음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철도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2. 철도소음 저감 방안 3. 철도소음대책사업 4. 철도소음피해 보상 등 주민지원사업 5.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7조에서는 5년마다 철도소음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통상 기본계획이란, 근거 법령에 따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의미함[14].

14) 『법령입안심사기준』, 법제처, 2021

제정안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기본계획이 철도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철도소음 저감 방안, 철도소음대책사업, 철도소음피해 보상 등 주민지원사업,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현재 「소음・진동관리법」[15]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에 포함된 철도 소음 제도개선 및 저감대책 방안과, 제정안에 따른 철도소음 대책의 기본방향 및 철도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예컨대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을 살펴보면, 철도 소음에 대한 최대소음도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

15)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3(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3. 지역별・연도별 소음・진동 저감대책 추진현황
4. 소음・진동 발생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5.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홍보 계획
6.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7. 그 밖에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철도 운영중의 순간 최대소음도를 측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교통소음 관리 지역에 대한 방음 시설 및 소음 저감 성능 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음.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주요내용 발췌】

<전략3> 국민 체감형 소음·진동 관리체계 구축 6 도로 및 철도 소음·진동 관리 제도개선 ① 도로 소음 노출 저감을 위하여 주택건설의 소음기준 개선 ○ 주택건설기준의 소음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충족하도록 야간 및 창호개방 시 소음 기준 마련 ② 자동차 소음허용기준 선진화 방안 마련 ③ 철도소음의 청감적 반응을 고려한 최대소음도 도입 검토 및 규제기준안 마련, 저감대책·비용산정 7 도로 및 철도 소음·진동 저감대책 다각화 ① 교통소음 관리지역의 운영사례 조사 및 선진사례 시범 적용 및 확대 ② 타이어 소음등급 표시제 정착을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실내 측정방법 마련 ③ 전기·수소 버스 및 트럭, 전기 이륜차 등 저소음 이동수단 보급 ④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선진화를 위한 소음저감 성능 평가 기준 개정 ⑤ 운행자동차 원격 소음 측정 시스템 개발 보급 및 교통소음 관리지역 등에 시범적용 및 효과분석

※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2021.1.20.

따라서 제정안에 대한 심사시에는 소음 분야에 대한 부처별 업무 및 기능 중복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바. 철도소음대책사업의 계획 수립(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철도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철도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철도운영자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철도운영자로 한정한다)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그 밖에 철도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③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제8조에서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철도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음대책사업계획에는 방음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사

업, 학교·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노유자 시설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그 밖에 철도 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유사 입법례로는 「공항소음방지법」[16]이 있음.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철도소음대책사업계획의 내용 중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부분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1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4.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5. 삭제
6.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7. 그 밖에 공항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 및 지원사업 대상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한정한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외되는 지역 안의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방음시설 설치사업
2. 텔레비전 수신 장애 방지사업
3. 학교 냉방시설 설치사업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과 중첩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현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 「소음·진동 관리법」 기준에 따라 방음벽, 자동소음측정망 등 방음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임.

다만, 학교, 공동이용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등에 대한 전기료 일부 지원 사업의 경우 철도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철도소음대책 사업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사.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안 제9조)

제 정 안
제9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①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철도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철도소음대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소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설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안 제9조는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소음측정망은 철도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철도소음대책에 활용하기 위한 장치임.

제정안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 철도 소음의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측정하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소음 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지도를 공개하도록 하는「소음·진동관리법」제4조[17] 및 제4조의2[18]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도심지역

17)「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 범위, 구역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이 목표 기간에 달성될 수

중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35개 지점을 선정, 철도소음측정망에서 철도소음을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정안과 같이 소음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형식은 아니며, 한국환경공단에서 반기별로 1회 수동으로 측정하는 것임.

【수동 소음측정망 예시】

※ 자료: 국토교통부, 한국환경공단 제출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8)「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도지사에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운영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 운영 철도소음측정망】

제1장 철도소음측정망 운영개요

1.1 운영현황

1.1.1 운영현황 총괄

- 교통소음의 주요 원인인 철도소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도심지역 중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35개 지점을 선정하여 '04년부터 측정
- 고속 철도노선 신설에 따라 6개 지점을 개편(신설)하여 '17년 하반기부터 측정
- 측정주기는 반기별 1회 측정

〈표 1-1〉 권역별 지점현황

구분		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측정지점 수		37	8	11	9	6	3
1일 평균 열차운행대수	'22년	192	373	126	61	247	32
	'21년	205	400	127	68	255	33

※ 충청권 2개 지점(덕암동 및 황용고가 시작점) 최고치 예상층 지점만 측정
- 지면위 지점과 최고치 예상층 지점이 상층하여 최고치 예상층 지점만 측정

※ 영남권 2개 지점(상리동 및 드라이브 인 모텔) 지면 위 지점만 측정
- 지점 주변 출입이 가능한 건물이 없는 관계로 최고소음 예상층 측정이 불가하여 지면 위 지점만 측정

※ 수도권 3개 지점(부천 궁전맨션, 현대자동차 성북출고센터, 봉골저수지) 지점은 개발공사로 인해 측정 불가
강원권 1개 지점(오리현 마을) 지점은 중앙선 복선화로 인한 선로변경으로 측정 불가

〈표 1-2〉 노선별 지점현황

노선 / 계	혼합선(수도권)	경의선	경부선	동해선 남부선	동해선	대구 중앙선	호남선	전라선	전주선	중앙선	경전선	장항선	경춘선	영동선	SRT(수서행)	태백선	광역철도	KTX 전용(경부)
41	7	1	9	1	1	1	6	2	1	2	2	1	1	1	1	1	1	2

1.1.2 철도소음측정망 측정방법

가. 측정위치

-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그 지역의 철도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나 철도소음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
- 지면 위 지점은 건축물로부터 철도방향으로 1m 떨어진 지점
-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상되는 지점(층)은 철도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 ~ 1m 떨어진 곳에서 측정

나. 측정횟수 및 시간

- 낮 시간대(06:00 ~ 22:00) : 2회(주로 11:00, 18:00)
- 밤 시간대(22:00 ~ 06:00) : 1회(주로 22:00)

다. 측정방법

- 샘플주기를 1초 이내로 하여 1시간 동안 측정한 등가소음도($L_{eq,1h}$)

※ 자료: 「2022년 총괄 철도소음측정망 운영결과」, 한국환경공단, 2023.7.

이와 같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측정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에 공유하고 있으며,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는 경우 국가철도공

단에서 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라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철도 소음을 측정하는 것과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9. 12. 31.>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2. 철 도

대 상 지 역	구 분	한 도	
		주 간 (06:00~22:00)	야 간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 음 (LeqdB(A)	70	60
	진 동 (dB(V))	65	60
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가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미고시지역	소 음 (LeqdB(A))	75	65
	진 동 (dB(V))	70	65

비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제정안 제9조에서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주체를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운영중인 철도 노선에 대하여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철도시설관리자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주체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아.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안 제10조)

제 정 안
제10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또는 자동소음측정망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제10조에서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또는 자동소음 측정망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사용하고,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제정안은 이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도 함께 두고 있음.

안 제9조에 대해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철도시설관리자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주체로 포함시키는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하여도 토지 출입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자. 보상금 지급 및 신청절차 등(안 제11조)

제 정 안
제11조(보상금 지급 및 신청절차 등) 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보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1조에서는 철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보상금 규정 신설 여부 신중 검토 필요

제정안은 제11조에서는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소음

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보상금 지급 대상 및 보상 금액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철도 분야의 경우 전체 연장이 5,085km에 달하는데, 전체 철도 연장 중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을 정하여 소음영향도 및 거주기간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전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재원 소요가 막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사례인 「공항소음방지법」의 경우, 자금 조성 규정[19]을 두고 있으나 이는 주택방음시설·주택냉방시설 설치 등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한 것이며, 제정안과 같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성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은 아님.

「군소음보상법」[20]의 경우 제정안과 같이 보상금 규정을 두고 있으나,

---

1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자금)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
2. 주민지원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① 보상금은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

이는 군 항공기는 급가속 및 고출력이 필요하고, 작전 및 훈련 목적상 행동반경이 넓으며 저공비행을 할 수 밖에 없어 민간 항공기에 비하여 소음의 영향범위가 광범위하여 보상금 지원의 필요성이 고려된 점도감안할 필요가 있음[21].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보상금 조항을 규정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공항 소음의 경우, 소음영향 범위가 해당 공항 지역에 한정되고, 공항이 비교적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지역 113.7㎢의 10.0만 세대 중 실제보상범위는 31.97㎢, 1,789세대에 불과한 반면, 철도는 소음이 철도 노선 전체에서 발생하고, 도심지역이 많아 보상범위가 과다하여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입장임.

특히 공항소음 보상범위가 소음대책지역 주변 폭 1km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철도의 경우에도 대입해보면, 철도노선

등 지급하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에서 필요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안내 또는 공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보상금 지급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군용항공기소음기준(안) 설정에 관한 연구」, 2002.9, pp. 1 ~ 11 (군사시설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의원 대표발의】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발췌, 2016.11.)

의 소음대책 지역은 1,01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공항 소음 대책지역 면적의 8.9배라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는 철도 소음 보상에 대해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라 현재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피해 배상 사례는 1건에 그치고 있는바, 기능의 중복을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배상 현황 (철도 소음진동 피해 관련) 】

번호	신청일 (접수일)	시도별	신청자	신청 내용	조정 결과
1	2018. 11. 29.	광주 광산구	유○석 외 247명	철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기각
2	2020. 5. 26.	서울 구로구	김○희 외 1136명	철도운행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	기각
3	2020. 8. 26.	인천 부평구	신○숙 외 352명	철도운행 소음진동, 분진에 의한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기각
4	2020. 11. 06.	전남 여수시	윤○순 외 1명	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	피해 보상 (9,931,400원)
5	2021. 11. 24.	경기 안양시	최○연 외 352명	철도 소음 및 아파트 공사장 소음, 분진에 의한 피해 보상 요구	기각

※ 자료: 국토교통부

2) 안 제11조 제명을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으로 수정할 필요

제정안은 제11조제1항에서에서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경우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상금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은 제13조에서 “보상금의 지급”을 제명으로 하여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정안의 제11조의 내용은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정안 제11조의 제명을 “보상금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차. 이의신청, 보상금 지급, 소멸시효 등(안 제12조 내지 제15조)

제 정 안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또는 보상금액을 다투는 자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중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지역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이의신청인”은 “재심의신청인 및 철도운영자·사업시행자”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이나 제3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 ①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인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에게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액(이의신청인 또는 재심의신청인의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신청 결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소멸시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

제 정 안
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철도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보상금과 관련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또는 보상금액을 다투는 자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지도록 하고 있음.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안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안 제13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1조제5항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결과에 동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인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인에게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보받은 보상금액(이의신청인 또는 재심의신청인의 경우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신청 결정결과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급하도록 함.

안 제14조에서는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 이내 행사하도록 하여 그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15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보상금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철도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였음.

제정안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위와 같이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카.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제 정 안
제16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④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⑥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0조에 따

제 정 안
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6조는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연차별 주민지원사업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 해당하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하고,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17조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로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됨.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함.

제정안과 같이 철도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타 소음원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하여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공항소음의 경우,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 입법례를 규정하고 있음[22].

다만, 공항소음과 달리, 철도소음은 방음벽을 통해 소음 방지가 가능한 점, 철도 소음에 대한 지원 범위가 과도해 질 수 있는 점, 중앙환경분쟁위원회를 통한 별도의 보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낮으므로 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의견임[23].

---

2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을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⑥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참고로, 제정안과 같이 보상금 규정을 두고 있는 「군소음보상법」에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및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안 제18조 및 제19조)

제 정 안
제18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철도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철도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철도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철도소음대책사업 및 피해 보상 등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철도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및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18조 및 제19조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심의위원회는 소음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등을 "심의"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며, 소음 대책에 대한 결정 기능은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24]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2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따라 위와 같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25]에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정과제로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한편, 제정안은 제18조에서 중앙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위원의 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제19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의 구성에 대한 대략의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지역 단위 검토 필요

제정안 제19조는 "지역별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제정안과 같이

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앙 및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어느 지역 단위 기준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에 해당하는 「환경분쟁조정법」[26]의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에 설치하고 있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고 있고,

「군소음보상법」[27]의 경우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26)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일부 체계·자구 수정 필요

제정안에서는 제5조에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약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약칭을 안 제18조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체계·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파. 자금(안 제20조)

제 정 안
제20조(자금) ① 철도소음대책사업, 소음피해 보상금,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철도운영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철도운영자의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 운임·요금 등 철도를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철도소음대책사업 2. 소음피해 보상금 3. 주민지원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정안은 철도소음대책사업, 소음피해 보상금,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의 국고지원금,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통해 철도운영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자금은 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보상금 재원 중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부담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검토 필요

제정안에 따라 철도소음대책사업, 소음피해 보상금,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보상금 재원 마련 주체 및 그 지급

주체로서 “철도운영자 및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와, “철도시설관리자”를 그 주체로 포함할 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부담금 성격을 지는 것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 집단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한 경제적·사회적 과제와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28].

제정안에 따른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경우,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 및 철도를 운영하는 철도운영자라는 특정 집단에 대해 소음 보상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담금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법 제3조[29]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서만 부담금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에 따른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부담금에

28)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사무처, 2019, pp.431~432
29)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해당하는 경우에는「부담금관리 기본법」제6조[30]에 따라 부담금의 신설 심사 및「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개정 절차가 수반[31]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에 해당하는「공항소음방지법」[32]의 경우, 제23조에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하나로서「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33]에 따른 소음부담금을 규정

---

30)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31) 현재 동 제정안과 관련하여 계류중인「부담금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은 없음.

3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자금)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
2. 주민지원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공항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하고 있는데 이는「공항소음방지법」제17조[34]에 따른 소음부담금으로,「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제5호[35]에 따라 설치된 부담금에 해당됨.

반면. 제정안의 경우, 위와 같이 조성되는 자금의 성질이 부담금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3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6조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에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과 제9조제2항에 따라 소음기준의 위반을 통보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는 추가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2배를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및 부과금액에 대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소음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소음부담금 및 제4항・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5)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제3조 관련)
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음부담금

하. 각종 부담금의 면제, 세제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안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제 정 안
제21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22조(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2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①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정안은 제21조에서 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22조에서 세제 지원, 제22조의2에서 지역기업의 우대, 제22조의3에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철도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 주민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는 「공항소음방지법」[36]이 있음.

제정안에 따른 특례를 수용할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주민지원사업,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수용할지의 여부와 함께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주민지원사업 실시에 대하여 수용이 곤란하며, 부담금 면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특례 규정 또한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

3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26조(세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6조의3(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특례) ① 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을 조례로 정하는 지역주민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3. 19.]

[시행일: 2024. 9. 20.] 제26조의3

특히, 세제지원 및 지역기업 우대 규정은 방음벽을 통한 소음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환경분쟁위를 통한 별도 보상이 가능하며, 지원 범위가 과도해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입장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정안은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가지조문을 둘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체계·자구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거. 보고·검사 등, 권한의 위임,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과태료 (안 제23조 내지 제27조)

제 정 안
제23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소음대책사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검사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안은 제23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한 때에는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소음대책사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2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5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만일 철도시설관리자를 철도소음 대책의 수립·시행 주체로 포함시키는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도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을지의 여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해서도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제26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함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75